

여성사우나 & 휘트니스 우대고객 가입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시설물의 명칭은 "호텔 프리마 여성사우나 & 휘트니스"라 한다. (이하 "업장"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2길 10 (청담동 56-17)

제 3 조 목적

본 약관은 당 업장과 우대고객 상호간에 입회와 이용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등의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만족스러운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 4 조 설립취지

건강관리시설의 이용을 통한 회원의 건강예방 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우대고객 상호간에 품격있는 친교의 장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제 5 조 정관

1. 당 업장의 사업주체는 호텔 프리마(주)로서 소유, 운영, 관리한다.
2. 우대고객은 우대고객 자격취득을 사유로 경영에 관여 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특전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 2 장 우대고객 자격

제 6 조 우대고객

입회를 원하시는 분은 업장의 약관, 회칙 및 업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이용료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우대고객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령은 가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기준 만 65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간질, 문신 및 다른 우대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분은 입회를 제한하거나, 입회 후에도 퇴회 조치 시킬 수 있다.

◆ 우대고객 가입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우대고객 가입 신청서 (당 클럽양식)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3Cm x 4Cm)
- 명함, 주민등록등본 1부

제 7 조 우대고객 권리

업장의 우대고객은 세부 이용규정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세부 이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우대고객 의무

1. 우대고객은 업장 우대고객 모두의 원활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우대고객 이용약관, 회칙, 세부 이용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우대고객께서는 입회 시 작성한 입회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업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대고객께서 책임져야 한다.
3. 우대고객 및 우대고객 동반객의 과실로 인한 부상, 도난, 사고, 훼손 등에 대해서는 우대고객에게 책임이 있으며, 또한 우대고객 동반객의 이용료 및 식음료에 대한 책임도 우대고객에게 있다.

◆ 우대고객 부칙

1. 호텔 프리마 여성사우나 & 휘트니스 클럽 우대고객님은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한 가족이다.
2. 클럽 우대고객 간에 서로 친목과 협조로서 최고의 클럽으로 만든다.
3. 먼저 보는 우대고객이 밝은 미소로 인사한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다.
5.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6. 클럽 내에서는 타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고성을 삼간다.
7. 이용한 자리는 뒷정리를 깨끗이 처리한다.
8. 시설 장비 및 비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소중하게 다룬다.
9. 비품(타월, 비누, 목욕용품, 화장품)을 절약하고 아껴 쓰며, 외부 반출 시 당 호텔 구매가격의 10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휘트니스 클럽 우대고객님은 머물고 간 자리를 항상 아름답게 한다.

제 9 조 우대고객카드

1. 우대고객 가입 시 이용료 내역은 호텔 프리마(주)에서 정한 대로 별도 안내서에 의한다.
2. 입회절차를 마친 우대고객에게는 업장은 우대고객카드를 발급한다.
3. 우대고객 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우대고객이 우대고객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장에 신고하여 소정의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대고객께서 감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우대고객 자격 상실 및 소멸 사유

1. 우대고객이 약정된 이용료를 일괄 납부하고 그 상응하는 기간이 소진될 시 또는 우대고객이 이용료를 환불 요청하여 반환받는 경우 우대고객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중도 우대고객 퇴회 시 환불이 가능하며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3. 중도 우대고객 퇴회 시 입회비는 약정기간 시작일로부터 퇴회 통보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제외한 후 반환한다.
4. 중도 우대고객 퇴회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20%로 부과한다. (세금 포함)
5. 업장의 우대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우대고객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 **우대고객 자격 상실 및 소멸될 수 있는 경우**

1. 우대고객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대리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2. 우대고객 이용약관, 회칙, 세부 이용규정 등 회사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장의 시설 훼손 및 소모품(비누, 타올 등 비품)의 무분별한 남용, 반출 등으로 타 이용객 및 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비인격적인(직원 또는 우대고객 간) 폭언 또는 막말을 할 경우 및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경우
5. 우대고객이 비이상적인 행동 및 언어로 직원들에게 3회 이상 제지를 당했을 경우, 우대고객의 자격은 상실 또는 소멸될 수 있다.

※ 우대고객 재가입 여부는 업장 이용 실적 및 제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 후 재가입 승인을 득해야 가능합니다. ※

제 11 조 휴회규정

1. 공정거래 약관에 의하여 장기 출장, 상병, 입영, 여행 등 업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할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의 사전 승인을 거쳐 연기할 수 있다.
2. 휴회는 사유서와 증빙서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인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3. 휴회는 가입기간 동안 1개월이상 최대 42일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합니다.

◆ **휴회 가능 사유**

- 장기 출장: 사유서와 우대고객의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확인서 운송수단 (차량, 항공) 사본 제출
- 상해, 질병: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진단, 소견서 원본 제출 (출산 및 사망 포함)
- 여행: 여행 목적지까지의 이동 수단 결제 영수증, 숙박시설 결제 영수증 제출

제 12 조 이용료 및 기타요금

1. 이용료는 선납되어야 하며 이용료와 기타요금, 운영 방침은 매년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라커룸 및 개인 사물함의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열쇠 제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3. 식음료, 마사지, 에스테틱, 필라테스, 헤어숍, 세신 등의 기타 제반 시설의 이용 요금은 따로

과금된다.

제 13 조 양도

1. 직계가족 이외의 우대고객 간의 전매, 매매가 이뤄질 수 없으며 확인 시에는 호텔 측에서 우대고객에게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양도 의사가 있을 시 담당자에게 사유와 명단을 정확히 통보하여,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 3 장 기타사항

제 14 조 시설이용

1. 시설 이용

- 1) 우대고객은 업장의 시설 이용 시 우대고객 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우대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직원에게 우대고객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우대고객은 상호 간에 권익존중을 위해 소음을 야기하거나 저속한 언어 구사 혹은 난폭한 행동은 삼간다. 이에 비협조적인 우대고객에 대하여 당 업장은 즉시 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탈의시에는 반드시 라커룸을 이용한다.
- 4) 휘트니스 클럽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 상·하의를 착용해야 한다.
- 5) 당 업장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하며, 흡연 시에는 규정된 흡연구역만으로 제한된다.
- 6) 당 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모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중인 호텔 직원이 근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휴관

당 업장은 연중무휴의 영업을 원칙으로 하나

- 1)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매년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일부 및 전체를 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공시한다.

제 15 조 안전사고 및 보상 책임사항

1. 우대고객 과실로 인한 부상, 도난, 사고, 훼손 등에 대해서는 우대고객에게 책임이 있다.
2.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의 귀중품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상법 153조)
3. 우대고객은 업장 이용에 앞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하며, 클럽 시설의 이용 중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으로 인해(본인에 의해 인지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유발된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정신적 피해에 업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업장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우대고객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개정

본 약관은 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전체 우대고객에게 적용된다.

제 17 조 기타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 및 세부 이용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 효력 발생

1. 본 약관은 업장의 개관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년 월 일

서명 _____